

감정평가서

건명	정상권 소유물건 (2025타경76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감정서번호	진산2025-023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산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김 병 태

감정평가액	사천칠백오십이만육천원정 (₩47,526,00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경매1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정상권 (2025타경760)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 록 표 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6.30	2025.06.25 ~ 2025.06.30	2025.06.30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23,763 이	토지	23,763 하 여	2,000 백	47,526,000
	합 계					₩47,52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기호(1)

페이지: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산211-1	임야	농림지역	23,763	23,763	2,000	47,526,000	
	[분묘 소재로	인한	토지	감안 가액 ₩	47,478,000]				
	합 계							₩47,526,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임야)으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며,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 기준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평가하였음.

(2)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 방법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원가법, 적산법),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이 있음.

(3)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평가

본건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내 매매사례 중 대상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하여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기준시점 및 조사기간

(1) 기준시점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인 2025년 06월 30일을 기준시점으로 함.

(2) 조사기간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가격조사를 2025년 06월 25일 ~ 06월 30일에 시행하여 평가대상 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5. 기타 참고사항

- (1) 본건은 인접 토지와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서,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은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입찰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2) 본건 평가시 본건 일부에 임도가 소재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를 평가하였음.
- (3) 본건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며, 토지는 이에 구매됨이 없이 평가하되, 분묘 소재로 인한 토지 감안 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4) 본건 지상에 자생중인 입목 등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되, 기준시점 현재 초목 등이 무성하여 육안으로 확인치 못한 분묘 등이 소재할 수 있으니, 경매 입찰시 토지의 상황 등 제반 관련사항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5) 본건 토지에 화체된 석축 등의 부합물은 해당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1. 대상토지의 개요

기호	소재지 (하동군)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형상 지세	2025년 개별지가 (원/㎡)	비고
1	진교면 고이리 산211-1	임야	23,763	자연림	농림 지역	부정형 급경사	915	-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격 산출

(1)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의 인근지역 등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하여 평가대상 토지와 비교가능성이 높은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하동군)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진교면 고이리 산153	11,880	임야	자연림	농림 지역	세로 (불)	부정형 급경사	1,410	-

* 공시기준일:2025.01.01.

(2) 시점수정

국토교통부 고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되, 미고시된 월의 지가변동률은 고시된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구 분	시점수정치	지가변동률
경상남도 하동군 (25.01.01~25.06.30) (농림)	2025.01.01 ~ 2025.05.31 : 0.116 2025.05.01 ~ 2025.05.31 : 0.033 (1 + 0.00116) * (1 + 0.00033 * 30/31) ≒ 1.00148	0.14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

(4) 개별요인 비교

1) 임야지대의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건	항목	세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 비교치의 결정

기호	비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 계	비 고
1	A	-	1.00	0.90	-	1.00	1.00	0.900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대비시 자연조건(획지의 상황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대법원판례(2007.7.12.선고2006두 11507, 2004.5.14선고 2003다38207 등)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999.6.21.토관 58342-471, 1999.5.20 기획 0100-725)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 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2) 인근지역의 사례

기호	소재지 (하동군)	지목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기준(거래) 시점	구분	2025년 개별지가 (원/㎡)
①	진교면 고이리 산8*	임야	농림지역	2,900	2023.05.23	공매	1,9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등

3)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구분	용도지역	지가수준	비고
본건 유사 토지	농림지역	2,000원/㎡ 내외	-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주위환경·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사례(①)을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가액 (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액 (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비교표준지(A)와 사례(①)의 비교

구분	기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	2,900	1.00586	1.00	0.757	2,208	≒ 1.564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 가격	1,410	1.00148	-	-	1,412															
비교요인	시점수정	경상남도 하동군 농림 (2023.05.23 ~ 2025.06.30): 0.586%(1.00586)																		
	지역요인	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개별요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가로 조건</th> <th>접근 조건</th> <th>자연 조건</th> <th>획지 조건</th> <th>행정적 조건</th> <th>기타 조건</th> <th>누 계</th> </tr> </thead> <tbody> <tr> <td>-</td> <td>0.70</td> <td>1.05</td> <td>-</td> <td>1.00</td> <td>1.03</td> <td>0.757</td> </tr> </tbody> </table>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 계	-	0.70	1.05	-	1.00	1.03	0.757	비교표준지는 사례와 대비시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하고, 자연조건(획지의 상황 등), 기타조건(사례 분묘 소재 등)에서 우세함.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 계														
-	0.70	1.05	-	1.00	1.03	0.757														

* 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반올림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본건과 비교 가능한 인근지역의 유사한 부동산의 평가사례,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구 분	그 밖의 요인 보정치
표준지 A	1.56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기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비고
	기 호	공시지가 (원/㎡)							
1	A	1,410	1.00148	1.00	0.900	1.56	1,983	2,000	-

* 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반올림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격 산출

(1) 비교거래사례 선정

본건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고, 물적, 위치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다음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하동군)	면적 (㎡)	용도지역	지목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2025년 개별지가 (원/㎡)
a	북천면 직전리 산13*~*, 산13*~*	43,342	농림지역	임야	4,614	2023.04.04	808 831

* 상기 사례 기호(a)의 일부는 접도구역 및 중로1류에 저촉이나, 전체면적 대비 그 면적이 미미한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 사정보정

비교거래사례는 적정한 시세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없음.(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

국토교통부 고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되, 미고시된 월의 지가변동률은 고시된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구 분	시점수정치	지가변동률
경상남도 하동군 (23.04.04~25.06.30) (농림)	2023.04.01 ~ 2023.04.30 : 0.013	0.609%
	2023.05.01 ~ 2023.05.31 : 0.015	
	2023.06.01 ~ 2023.06.30 : 0.012	
	2023.07.01 ~ 2023.07.31 : 0.015	
	2023.08.01 ~ 2023.08.31 : 0.012	
	2023.09.01 ~ 2023.09.30 : 0.011	
	2023.10.01 ~ 2023.10.31 : 0.012	
	2023.11.01 ~ 2023.11.30 : 0.011	
	2023.12.01 ~ 2023.12.31 : 0.008	
	2024.01.01 ~ 2024.12.31 : 0.352	
	2025.01.01 ~ 2025.05.31 : 0.116	
	2025.05.01 ~ 2025.05.31 : 0.033	
	$ \begin{aligned} & (1 + 0.00013 * 27/30) * (1 + \\ & 0.00015) * (1 + 0.00012) * (1 + \\ & 0.00015) * (1 + 0.00012) * (1 + \\ & 0.00011) * (1 + 0.00012) * (1 + \\ & 0.00011) * (1 + 0.00008) * (1 + \\ & 0.00352) * (1 + 0.00116) * (1 + \\ & 0.00033 * 30/31) \\ & \approx 1.00609 \end{aligned} $	

(4)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거래사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개별요인 비교

1) 임야지대의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건	항목	세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 비교치의 결정

기호	거래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 계	비 고
1	a	-	0.60	0.80	-	1.00	1.00	0.480	본건은 거래사례와 대비시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자연조건(주위환경, 획지의 상황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기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비고
	기호	단가 (원/㎡)							
1	a	4,614	1.00	1.00609	1.00	0.480	2,228	2,200	-

* 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반올림

4. 토지 단가의 결정

(1) 토지 단가 검토

기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단가(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원/㎡)	비고
1	2,000	2,200	-

(2) 토지 단가의 검토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단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와 비교하여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단가로 토지단가를 결정함.

(3) 토지 단가의 결정

기호	토지 단가(원/㎡)	비고
1	2,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감정평가액 및 결정의견

1. 결정의견

상기의 평가사례, 거래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 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 함.

2. 감정평가액

구분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47,526,000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합 계	47,526,000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소재 '절골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급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 너덜지대임.

(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에서 본건으로 이어지는 노폭 2~3 미터 내외의 임도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젓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토지감정평가요항표

기호(1)

Page : 2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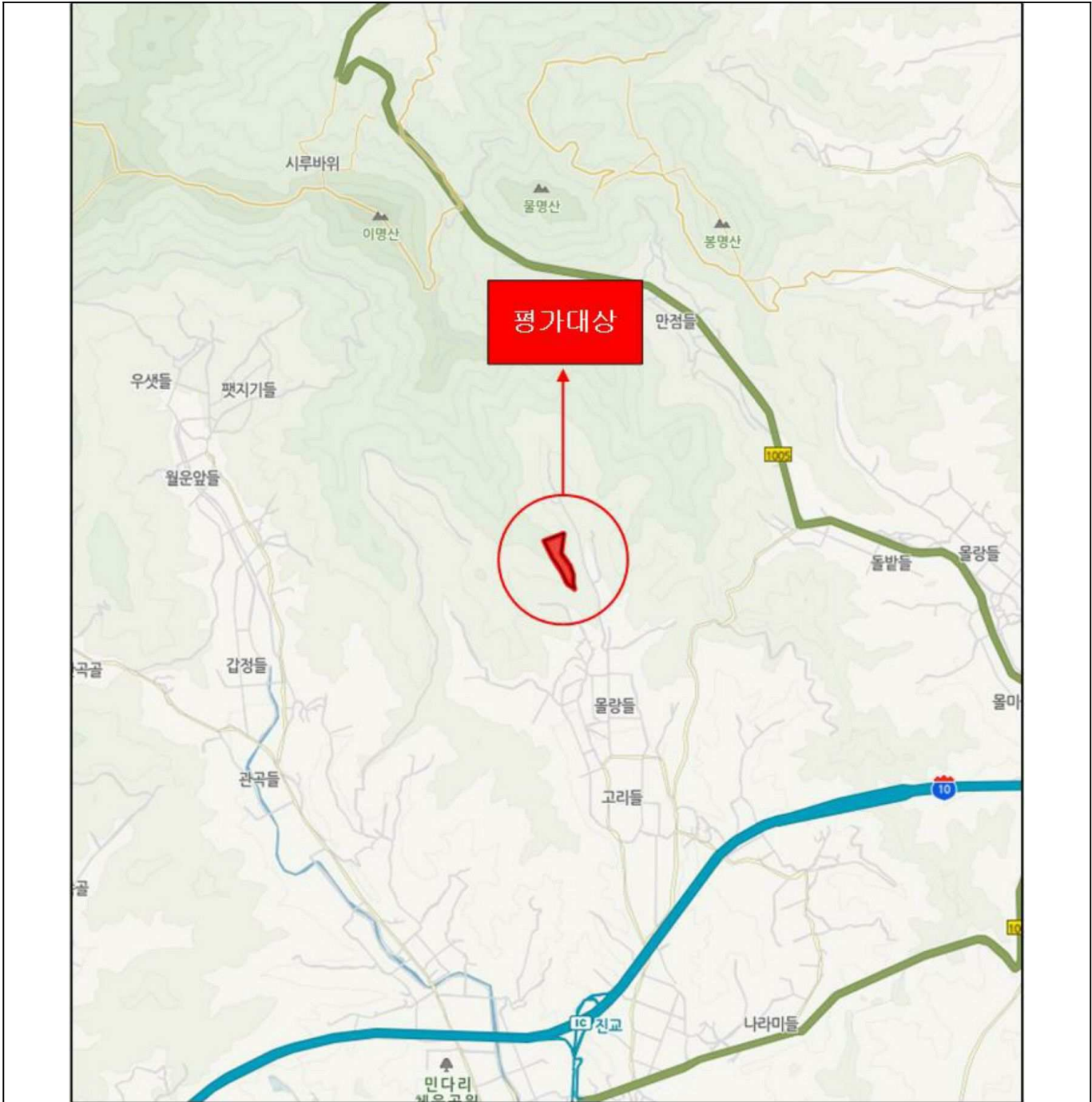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산211-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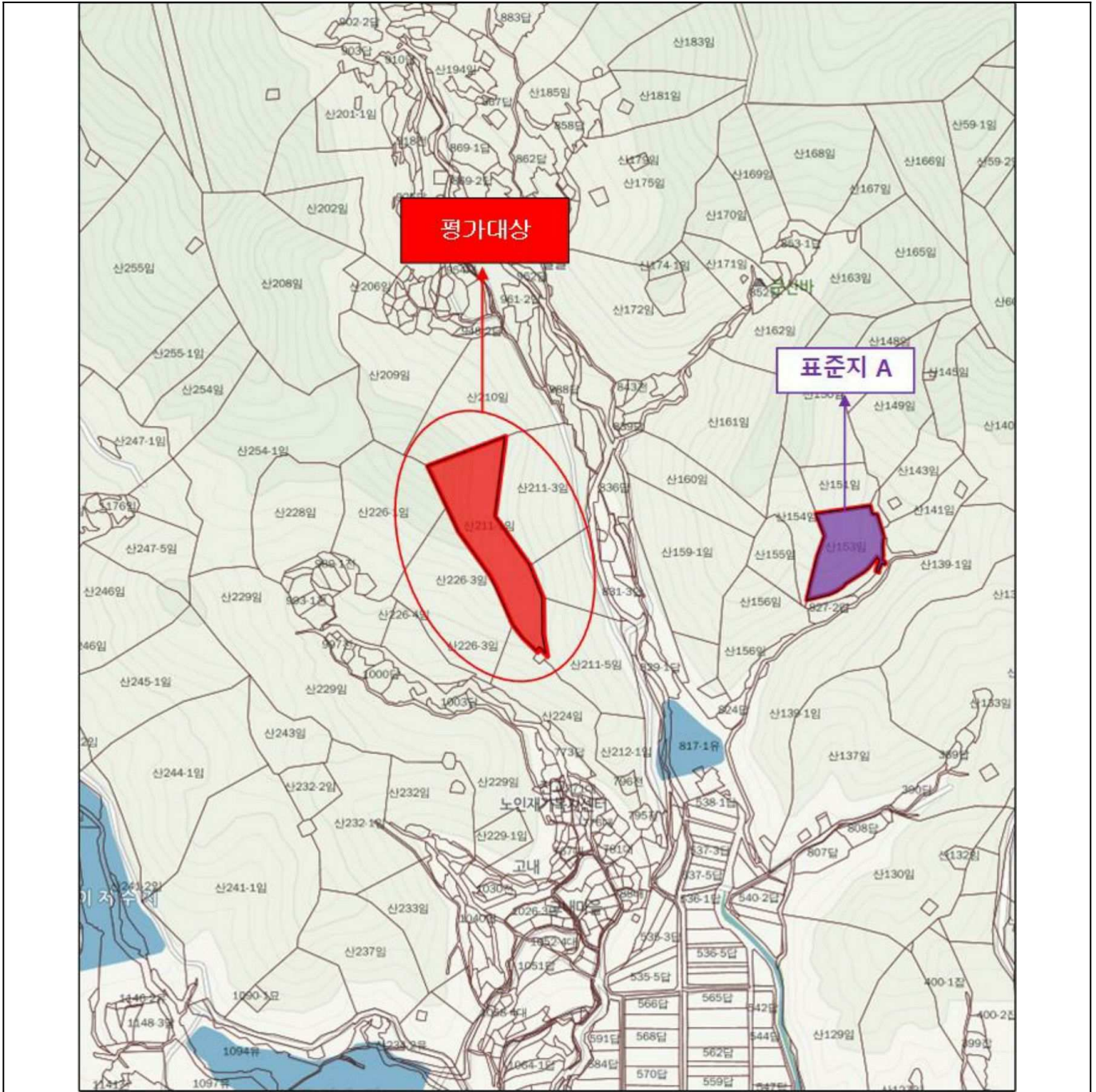


S = Non-Scale

상세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산211-1



S = Non-Scale



(1)



(1)



(1)



(1)



